

복 지 규 정

제 정 : 1992. 7. 7
1차개정 : 1993. 7. 9
2차개정 : 1993.12.30
3차개정 : 1994. 7. 7
4차개정 : 1996. 7.28
5차개정 : 1997. 1. 1
6차개정 : 1999. 1. 1
7차개정 : 1999. 9. 2
8차개정 : 2002.12. 9
9차개정 : 2003. 9. 1
10차개정 : 2004. 4.21
11차개정 : 2004. 7.21
12차개정 : 2004.11.23
13차개정 : 2013.12.18
14차개정 : 2014. 7.29
15차개정 : 2015.12.14
[16차개정 : 2018. 9.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 및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제2장의 규정은 본사 및 국내지사(사무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 및 직원(비상근직원을 제외한다. 제2장에서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3장의 규정은 국외지사(사무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국외 현지채용직원을 제외한다. 제3장에서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국내복지

제 1 절 안전과 보건

제 3 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 4 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안전 및 위생교육) 직원채용등 필요한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 6 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와 간이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단체상해보험 가입)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 또는 장애발생 및 입원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직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 2 절 체육과 문화

제 8 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9 조(체육행사등) ①직원의 체력증진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직원의 개별적인 상호친목활동을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③직원의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3 절 후 생

제10조(후생시설 등)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명절,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등에 축하 기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학자금 지원)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 12 조(통근차량 운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교통실비 범위내에서 통근보조금을 지급하고 통근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주택대여) 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고 있는 때에는 공사소유의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직원에대하여도 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대여에 따른 권리보전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 및 지사장에 대하여는 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제 14 조(무주택직원의 주택건설 지원) 무주택직원이 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복지자금 대여) 직원의 생활안정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 16 조(합숙소 설치·운영) ①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합숙소 건물은 공사가 소유한다. 다만, 공사소유의 건물이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합숙소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식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피복대여) ①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피복의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 1년으로 제2항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피복이 분실, 훼손 또는 오염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다시 대여할 수 있다.

④대여피복의 수선 및 세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착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비치하여 사용하는 피복에 대하여는 공사가 부담한다.

제 18 조(선택적복지) 직원이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절 재 해 보 상

제 19 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및 전염성 B형 간염을 포함한다)에 걸리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를 보상한다.

제 20 조(재해부조) ①직원의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말미암아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에는 재해부조를 한다.

② 비상재해로 인해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상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부조를 할 수 있다

제 5 절 연 · 월차휴가보상

제 21 조(연차휴가보상금)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또한 그러하다.

제 3 장 국 외 복 지

제 1 절 보 건

제 22 조(의료비지급) 직원 및 그의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요양을 하는 때에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 제1호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이상에 대한 치료인 경우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4. 의료비 총액이 미화 10불 상당액 미만인 경우

제 2 절 후 생

제 23 조(장학금 지급) 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24 조(사회보장보험 가입등)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보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

1. 직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현지의 의료보험
2. 현지법령이 직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강제로 들게하는 보험
3. 현지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국내의 재해보상보험

제 25 조(주택대여) ①직원에 대하여는 공사소유의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대여에 따른 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③직원의 자녀가 인근국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따로 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제 3 절 보 칙

제 26 조(준용) 제3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복지) 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에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28 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규정시행요강으로 정한다. 다만, 학자금 대여 및 복지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은 복지자금대여취급요강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요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①이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근무하던 자로서 공사가

포괄승계한 직원의 근무기간 및 연월차일수계산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의 근무기간 및 연월차일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한국수출입은행에 근무하던 자로서 공사가 포괄승계한 직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복지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받은 주택과 복지자금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1)

이 규정은 199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199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정직원보수복지규정, 국외보수복지규정의 내용이 이 규정과 다른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 칙(4)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이 규정은 1999년 9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